

의안번호	제 278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9년 10월 08일

#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278 호
----------	---------

제출연월일 : 2019년 10월 08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세월호 침몰사고 및 헝가리 참사 이후 수영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어 기 설치중인 재난안전체험관과 연계한 재난안전복합타운 조성 사업으로 생존수영 특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 일하는 부모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일선 소방관서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 제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 2. 주요내용

### □ 재산의 취득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6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 1. ~ 2022. 11.
- 규 모 : 연면적 3,760㎡(1개동, 지하1층 지상3층), 부지면적 7,817㎡
- 사 업 비 : 13,000백만원(국비 3,000백만원, 도비 10,000백만원)

#### 《충북소방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6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11. ~ 2021. 2.
- 규 모 : 800㎡(1개동, 지상2층), 부지면적 5,268㎡
- 사 업 비 : 2,448백만원(고용보험기금 2,000백만원, 도비 448백만원)

###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 201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매입가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건물	2	4,560	15,448,132				
	기타							
1	토지							
	건물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61번지 일원	3,760	13,000,000	2022	국민체육센터 건립	-	신축
	기타							
2	토지							
	건물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60번지 일원	800	2,448,132	2021	직장어린이집 건립	-	신축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 관계 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b>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b></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p> <p>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b>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b>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p> <p>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p> <p>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b>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b>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b>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b>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b>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b>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li> <li>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li> <li>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li> <li>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li> <li>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li> </ol>